

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안



거 창 군

[기획예산담당관]

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간 운영 계획안

- ❖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도 확대로 재정민주주의 실현
- ❖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'최우수' 자치단체 선정

I 추진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
- 「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(이하 주민참여예산조례)」 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

II 2022년도 추진방향

-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율 제고 : 예산학교 운영 확대 내실화
- 위원별 개선 방안 요청사항 반영 : 제안 모호성 극복을 위한 숙의 강화
- 다양한 주민참여 운영 체계 구축 : 참여의 다양화 및 제안사업 질적 제고

<<2021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>>

◆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

- 예산학교 시기조정 : 7~8월 → 4~9월 *제안접수기간 ~ 공모확정시기 까지 운영
- 예산학교 운영 시 참여 대상자 확대 : 청소년, 사회적약자 등

◆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질적 제고

- 제안 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시 차등 지원(소모성 ⇔ 생산성)

◆ 제안 모호성 극복을 위한 소통 및 숙의 활동 강화

- 분과위원회 심의 시 제안자가 직접 발표 *제안자 발표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서에서 심의 지원
-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예산학교 용역사가 전문가,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

◆ 주민참여예산 참여 계층의 다양화

-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시 사회적약자 추가

⇒ 행안부 평가지표에 따른 목표설정 : 목표 98점(전년89점) / 【붙임 3】 참조

Ⅲ

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흐름도

	단계별 업무	업무내용	일정
계 획 수 립 및 준 비	연간 운영계획(안) 작성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획예산담당관) 연간 운영계획(안) 작성 	1월
	↓		
	주민참여예산위원회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1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획예산담당관) 2021년 사업 평가 및 환류 • (기획예산담당관) 2022년 운영계획 확정 및 공고 	2~3월
	↓		
	예산학교 등 주민역량 강화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1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획예산담당관) 권역별 예산학교 운영 • (인구교육과, 읍면) 예산학교 운영 참여 	4~9월
공 모 및 사 업 선 정	↓		
	주민제안 공모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획예산담당관) 주민제안 공모 공고(3개 분야) • (기획예산담당관) 2023년 예산편성 의견수렴 설문조사(21개 항목) • (인구교육과, 읍면) 청소년참여위원회, 지역회의 운영 • (소관부서) 사업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	4~6월
	↓		
	주민참여사업 온라인 투표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획예산담당관) 주민 선호도 조사 - 분과위원회 심의 시 주민 선호도 내용 안내 	7월
	↓		
	분과위원회 운영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1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분과별 선임부서) 보고자료 총괄 / 회의실 대여 등 • (분과별 참여부서) 보고자료 작성 및 제안사업 검토 ※ 예산학교 용역사 : 회의 준비 및 제안사업 부서별 전달 중간 역할(제안사업 구체화 후 부서별 전달) • 주민제안 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	7~9월
↓			
	주민참여예산위원회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1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획예산담당관)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※ 예산학교 용역사 : 회의 준비 및 진행 보조 ※ 제안설명 : 분과위원장 • (기획예산담당관) 부서별 선정내용 통보 	10월
↓			
	운영위원회 개최 (주민참여예산조례 제1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획예산담당관) 선정사업 인센티브 지급 내용 결정 • (기획예산담당관) 운영상 개선방안 의견수렴 	10월
예 산 제 출 및 관 리	↓		
	예산(안) 군의회 제출 (지방자치법 제14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각 사업부서) 주민참여예산 편성(안) 작성 • (기획예산담당관) 예산편성(안) 취합 및 군의회 제출 ※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	11월
↓			
	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각 사업부서) 사업비 집행 시 주민참여 예시) 공사 추진 심 명예감독관 / 준공검사 시 입회 등 	익년도

IV 2022년 세부 추진계획

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 원 수 : 30명(당연직 5, 위촉직 25) / 임기 : 2년
 - 임기만료 : 위촉직 10명(~'22. 2. 19.)
 - ☞ 임기만료 위원 대상 연임여부 조사 후 신규 위촉 결정
 - ☞ 신규 위촉 시 청소년, 사회적 약자 등 우선선발(공개모집)
- 운 영 : 정기회의 연1회, 임시회(위원 1/3이상 요구 시)
- 역 할
 -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
 -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·집약 활동
 -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설명 및 홍보활동
- 운영계획
 - 2월 :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(2021년 평가, 2022년 계획 수립)
 - 10월 :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사업 선정) *분과위원장 제안사업 설명
 - ※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2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확대 및 내실화

- 운영시기 : 4월 ~ 9월(제안접수 ~ 공모확정시까지)
- 예산학교 역할
 - (권역교육)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
 - (숙의강화) 제안 모호성 극복을 위한 사업부서와 제안자의 중간 역할
 - (전문가, 코디네이터) 분과위, 예산위 개최 시 진행 보조 및 자문
 - (참여의 다양성) 다양한 계층의 참여 독려

◆ 전년대비 달라진 점

- 운영시기 : 7월~8월 → 4월~9월 / 제안 확정시기 → 제안 접수 ~ 공모확정시)
- 역할강화 : 예산학교 교육 → 예산학교 교육, **숙의강화**, **분과위·예산위 개최 자문**
- 참여확대 : 이장, 주민자치회 위원 등 → 이장, 주민자치회 위원, **청소년**, **사회적약자**
 - ※ 참여확대, 참여인원 등을 평가하여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(지역주도형) 읍·면별 실링 차등

○ 2022년 주민 예산학교 운영 용역

- 소요예산 : 19백만원 정도 *추경 시 9백만원 추가 편성(본예산 10백만원)
- 교육장소 : 6개 권역(가정읍, 주상·옹양·고제, 북상·위천·마리, 남상·남하·신원, 가조·가북, 청소년)
- 사업기간 : 180일 정도
- 용역내용 : 예산학교 운영, 제안 구체화, 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및 진행요원으로서 보조 및 자문

3 주민참여예산 공모 및 주민의견 수렴

○ 주민참여예산 공모

- 공모규모 : 총 16억원

구 분	사업내용
주민주도형 공모사업 (5억 원)	- 1억 원 이내, 행사성 사업 3천만원 이내 - 군민생활과 밀접한 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- 전 군민(공무원 포함)
<u>청소년청년</u> 주도형 참여사업 (5억 원)	- 1억 원 이내, 행사성 사업 3천만원 이내 - 일자리, 문화예술, 복지 등 군 자체의 <u>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사업</u> - <u>9세 이상 45세 이하인</u> 거창군민(<u>청소년 9~24세, 청년 19~45세</u>)
지역주도형 자치사업 (6억 원)	- 5천만 원 이내(<u>읍·면별 실링 부여</u>) -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- <u>읍·면 자치회의</u>
예산편성에 바란다 (설문조사)	- 예산운영·분야별 투자방향, 기타 의견 등 - 전 군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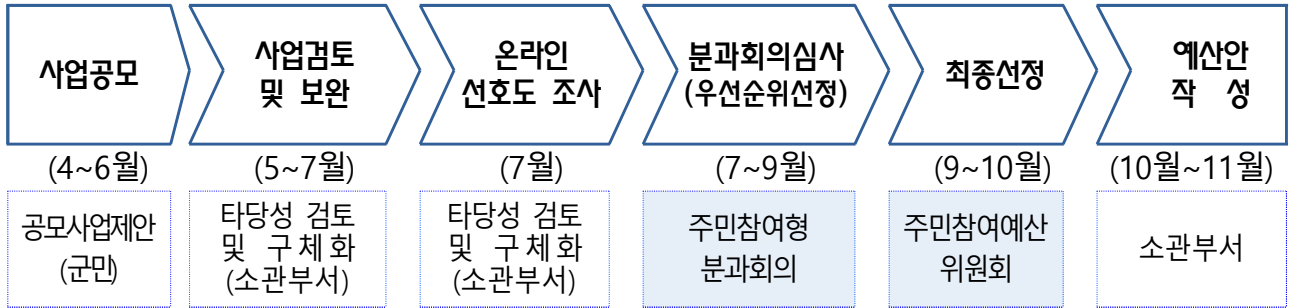
※ 청년주도형→청소년·청년주도형 「청소년기본법」의 기본취지인 '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 참여 보장' 반영

※ 분야별 한도액을 정해두되 예산위원회 심의 시 제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도액 이상 채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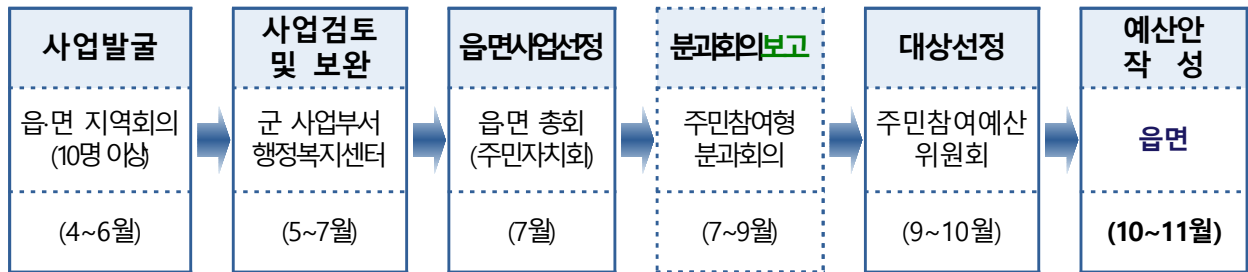
- 공모기간 : 4월 ~ 6월 (3개월 정도)
- 신청자격 : 거창군민, 단체
- 대상사업 : 군내 시행가능사업(타기관, 국가사무 제외)
- 참여방법 : 사업제안 신청서 제출
- 제안접수 : 홈페이지, 우편, 방문접수

- 추진절차

▶ 주민주도형 / 청소년·청년주도형



▶ 지역주도형



○ 예산편성 의견수렴

-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운영(군 홈페이지)

▶ 운영기간 : 연중

▶ 내 용 : 예산편성과 운용, 예산절감 등 의견 제시 등

▶ 참여방법 : 군 홈페이지>주민참여예산제>예산편성에 바란다

- 예산편성에 바란다(설문조사)

▶ 운영기간 : 2022. 4. ~ 6. (3개월 정도)

▶ 대 상 : 거창군민

▶ 내 용 : 20여개 항목('23년도 예산운영 · 분야별 투자방향 등)

▶ 방 법

- 방문 : 기획예산담당관실, 민원소통과, 읍·면사무소

- 인터넷 참여 : 군청 홈페이지

☞ [군민참여](#)>[군민의소리](#)>[설문조사](#)>(예산편성에 바란다)[[창개설](#)]

4 주민참여기구 체계 정착 및 숙의활동 강화

○ 분과위원회 운영(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위기구)

- 분과 수 : 4개 분과(기획보건, 행정복지, 경제산업, 농업분과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에 참여
- 역할 및 기능
 - ▶ 신규 정책사업, 주민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
 - ▶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
- 운영방법(참여자별 역할)
 - ▶ 분과위원 : 우선순위 결정(심의의결)
 - ▶ 선임부서 : 보고자료 총괄 작성
 - ▶ 참여부서 : 회의자료 작성 및 제안사업 검토, 조치계획 제출
 - ▶ 예산학교 용역사 : 제안자-부서 사업구체화 중간역할
 - ▶ 분과위 운영 시 발표 : 제안자 *제안자 미참석 시 사업부서 심의 지원

◆ 전년대비 달라진 점

- 중간역할 추가
 - (당초)제안자→소관부서(구체화, 가능여부)→선임부서 *구체화 과정 오류 발생
 - (변경)제안자→용역사(구체화)→소관부서(확인, 가능여부)→선임부서
- 분과위 제안내용 설명 : 간사 → 제안자 *제안자 미참석 시 사업부서 심의 지원

○ 운영위원회 운영

- 구성 : 5명[기획예산담당관, 분과위원장 4명]
- 역할 :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, 인센티브 지급 내역 확정

①	②	③	④	⑤
기 획 보 건 분 과 회 의	행 정 복 지 분 과 회 의	경 제 산 업 분 과 회 의	농 업 분 과 회 의	운 영 위 원 회
위 원 7 명 (분과위원장 호선)	위 원 8 명 (분과위원장 호선)	위 원 7 명 (분과위원장 호선)	위 원 7 명 (분과위원장 호선)	위 원 5 명 (운영위원장 호선)
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	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	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	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	기획예산담당관 4개 분과위원장 5명으로 구성

○ 읍·면 지역회의 활성화

- 인원 : 최소 10명 이상

- 구성 : 읍·면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조직 운영

※ 예시) 주민자치회 분과로 별도 설치 심의 / 주민자치회 임시회의 시 심의

- 활성화 방안 : 제안사업,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 상설화

※ 근거 : 「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

- 역할 :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심사,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

- 지원 : 홍보, 사무용품, 총회 등 수용비 지원(각 50만원)

☞ '주민자치회 제안 및 심의 건수' 「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」 지표 반영(행정과 협조)

5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율 제고

○ 읍·면 자치사업 내실화

- 주민자치회 위원 예산학교 수료자 '지역회의' 참여자격 부여

- 읍·면 제안사업 선정

- 읍·면 예산 직접 편성 추진(지역주도형)

*주민주도형은 본청 예산편성 및 시행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읍면 협의 재배정 시행

○ 제안사업 전자투표 도입, 선정

- 군민 대상 사업 선호도 투표결과 선정 반영

- 투표 수 : 1인당 5개

- 투표방법 : 온라인투표

- 적용방식 : 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선관위투표시스템

- 참여방법

▶ 거주지 선택 → 개인인증 → 투표

▶ 사업별 투표 : 전체사업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

▶ 투표안내 : 거창군 카카오톡, 블로그 등 SNS, 보도자료 등

☞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호도 투표 기술적 가능 시 우선 활용

- 참여주민 인센티브 지급(거창사랑상품권)
 - 지급방법 : 선정사업 모두 지급하되 일회성, 생산성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
 - 심 사 : 운영위원회(5명 / 기획예산담당관, 4개 분과위원장)
 - 예 산 액 : 1,000천원
 - 심사기준 및 지급(안)
 - ▶ 소모성 · 일회성 사업 : 최대 2만원
 - ▶ 공동체 활성화, 전통문화 보전 등 생산성 사업 : 최대 10만원

6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

- 홍보계획 수립 : 2021. 2월
- 홍보내용 :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 안내, 운영 성과, 예산학교 등 다양한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도 제고
- 홍보방법
 - 자료제작 배포 : 리플렛, 전단지, 소식지, 우수사례집 등
 - 보도자료, 현수막, SNS 홍보 강화(카카오톡, 홈페이지 등)

V 향후계획

- 2022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: 2월 중
 - 일 시 / 장 소 : 2021. 2월 중 / 군청 대회의실
 - 참석대상 :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
 - 주요내용 : '21년 운영 성과 및 '22년 운영계획 의견수렴
-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 및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공개(홈페이지) : 2월 중
- 2022년 제1회 추경(주민 예산학교 운영) : 3월 / 9,000천원 추가

◆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 : 우수

◆ 주민참여예산 운영 확대

채 널	검토건수	반영건수	예산반영 규모(천원)	비고
계	63	18	2,475,600	
주민 공모사업	20	14	686,000	
주민주도형	13	8	439,000	
청년주도형	2	2	26,000	
지역주도형	5	4	221,000	
예산학교	25	2	1,269,600	
설문조사	18	2	520,000	

◆ 주민참여기구 확대

-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: 조례 개정(전면개정)
- 읍·면 지역회의 활성화 : 주민자치회 분과 설치
- 예산학교 확대 운영 : 5개 권역별 실시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구성 : 위촉위원 10명→25명

◆ 예산제도 확대

- 읍·면 자치사업 공모 확대 : 1억→6억
- 제안공모 참여 군민 보상 : 18회, 각 2만원(거창사랑상품권)